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4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황운하·조 국·김준형

김재원 · 서왕진 · 차규근

이해민 • 박은정 • 신장식

정춘생 · 김선민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주거비는 연간소득의 19%에 달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거기본법」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주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의미하는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 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 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적 위험"을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 하고, "갖는다"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고령자 등"을 "고령자·지원대상아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최소한의"를 "적정한"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중 "최저주거기준"을 각각 "적정주거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최저주거기 준"을 각각 "적정주거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설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이 최초로 설정·공고될 때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으로 본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제2조(주거권)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u>사회적 위험</u> 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위험-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	
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	
을 할 권리를 <u>갖는다.</u>	<u>フトス</u>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	
(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에 따른 <u>최저주거기준</u>	8 <u>적정주거기준</u>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	
준에 관한 사항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에 따른 <u>최저주거기준</u>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
 준의 설정 및 변경
- 2. ~ 7. (생략)
- ② ~ ⑦ (생 략)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

- ② (생 략)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지원할 수 있다.
- ④ (생 략)
-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u>고</u> <u>령자 등</u>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1 <u>적정주거기준</u>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3
<u>지원하여야 한다</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u>1</u>
<u>령자·지원대상아동 등</u>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
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② <u>제1항</u>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 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u>최저주 거기준</u>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u>최</u>저주거기준을 설정·공 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u>최</u>저주 건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u>최저주거기준</u>에는 주거면 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
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7조(<u>적정주거기준</u> 의 설정) ①
<u>적 정 한</u>
<u>적</u>
<u> 정주거기준</u>
②
<u>적정주거기준</u>
적정주거
· <u>구이기</u> 기준
<u>기단</u>
 の
③ <u>적정주거기준</u>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u>최저주거기준</u> 미달 가구 기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최저주</u> 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 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 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u>최저주거기준</u>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u>최저주</u> 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 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제	18조(<u>적정주거기준</u> 미달 가구
	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u>적정주</u>
	<u>거기준</u>
	· ②
	<u>적정주거기준</u> -
	(3)
	<u>적정주</u>
	<u>거기준</u>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u>최저주거기준</u>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 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 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u>적정주거기준</u> -